

#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최 선 우\* · 류 채 형\*\*

- |                  |                 |
|------------------|-----------------|
| I. 서론            | IV. 미시적 범죄문제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거시적 범죄문제 분석 |                 |

---

## Abstract

---

### A Study on the Problems of Crime in Unified Germany

After unification, the problems of crime in Germany are considered the secondary (first, unemployment) significant Social Probl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crime problems in Germany, which was divided into two areas, that is, the old land(FRG) and the new land(GDR).

For this, we applied two methods: Macroscopic Perspectives and Microscopic Perspectives. In Macroscopic Perspectives, we used the political-economical-socio-cultural

factors and the formal crime statistics. And in Microscopic Perspectives, we used crime victim survey which are composed the extent of victimization and the reporting of crime to the police.

Through this study, we could find out the definite differences in two areas. But we can't reveal the consistent differences. In Macroscopic Perspectives, the GDR's crime problem is more significant, but in microscopic perspectives, the FRG's crime problems are more.

**Key Words:** Crime Problems, Macroscopic Perspectives, Microscopic Perspectives, Political-Economical-Socio-Cultural Factors, Formal Crime Statistics, Crime Victim Survey.

---

---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원

## I. 서 론

오늘날 독일은 통일 이후, 직면한 수많은 장애요인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 이후 독일에서의 범죄문제는 실업문제 다음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이러한 범죄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독일의 범죄문제는 일반적으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외에도 ‘통일’(unification)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동서독 사회구성원들은 지난 45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적은 않은 갈등과 이질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동독지역은 사회전체에 걸쳐 그러한 갈등요소를 더욱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되는 방식을 취했고, 이에 따라 연방독일공화국(서독)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모든 형사사법시스템 관련요소들이 이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독지역에는 중대하고 강력한 변혁기간이 전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통일 이후 독일이 안고 있는 범죄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실, 범죄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먼저,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같은 갈등은 거시적으로 범죄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식적 범죄통계를 통해 범죄현상과 범죄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조사를 통해서 범죄피해 정도와 경찰과 같은 공식적 기관에 대한 신고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sup>2</sup> 미시적

<sup>1</sup> 김형만 외,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3), p. 452.

<sup>2</sup> 범죄피해조사 역시 직접 수집한 1차 자료가 아니라 큐리(H. Kury) 등에 연구된 2차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Helmut Kury et al., “Reporting of Crime to The Poli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 Comparison of the Old and the New Lands,” *Justice Quarterly*, Vol. 16, No. 1(March, 1999).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독일의 범죄문제에 대한 접근은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모두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구분하여 양 지역간에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사회구조적·지리적 특성에 따라 범죄발생 빈도와 그 유형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 또는 범죄문제를 측정·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즉 범죄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파악하지 않고서는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지역에서 특정시간에 특정종류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찰력 등의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범죄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비공식적인 노력 역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래에서는 통일독일의 범죄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통일이후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징과 공식적 범죄통계를,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범죄피해자조사가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거시적 관점

#### 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거시적 관점에서 한 나라의 범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른바 ‘치안환경 결정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경제적 안정성(economic stability), 그리고 사회문화적 안정성(socio-cultural stability)과 관련된다.<sup>3</sup> 이러한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같은 하나의 ‘체제’(體制)를 유지·지속시켜주는 동력이라고 할

<sup>3</sup>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서울: 대왕사, 2003), pp. 25~33.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범죄율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거시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보여주는 사회 함축적 의미는 결코 경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들 요인들이 뚜렷이 구분되어 그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복잡하게 얽혀서 그것이 범죄문제로 표면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이를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 (1) 정치적 요인

먼저, 콘클린(J. E. Conklin)은 정치적 안정성 차원에서 범죄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정치권력 집단의 권위와 정치제도에 대해 순응하고 결속력을 구축하게 되면, 가치갈등으로 인한 그리고 개인과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적 차원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sup>4</sup>

국가라는 하나의 인위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안정성은 국가이념(예컨대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승인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이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 이는 범죄문제로 더 나아가 체제붕괴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이념의 문제는 하나의 이념 안에서 야기될 수도 있으며, 다른 정치이념의 비교우위성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컨대, 사회구성원들이 비록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수 지배권력집단의 횡포와 무능력 그리고 정치집단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 범죄와 무질서가 뒤따르게 된다. 후자의 경우,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비교우위적 요소가 확인되면,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범죄와 무질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안정성 역시 범죄문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경제적 안정성은 그 나라의 경제구조의 안전성(고용구조, 실업률 등),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

<sup>4</sup> John E. Conklin, *Criminology* (Boston: Allyn & Bacon, 1998), p. 549.

분적 정의의 실현 수준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대해 불만이 표면화되었을 때, 이는 분노의 표출로써 혹은 목표와 수단간의 갈등으로써, 그리고 생존권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이다. 비행과 범죄의 설명으로써 아노미(anomie)의 주요한 가정은<sup>5</sup>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다수는 비합법적이고 일탈적인 활동에 가담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을 하고 싶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으나 직업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좌절감 또는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머튼(R. K. Merton)에 따르면, 아노미상태에 대한 반응이나 적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sup>6</sup> 한편, 로시(P. H. Rossi) 등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범죄문제를 사회유대(social bond)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과자들이 정식취업을 하게 되면 그로인해 사회유대가 형성되고, 범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반대로 고용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그런데 마르크스(K. Marx)의 범죄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보다 극단적이며, 거시적이다. 즉,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경제적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집단에 의해서 상호 양립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체제에서 부르주아는 적은 노동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 잉여노동인력(marginal surplus population)이 생기게 되며, 이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범죄의 유혹과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하에서의 범죄는 생활조건에 대한 반응이며, 대부분의 노동자계급 범죄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존재하기 위한 생존수단이 된다는 것이다.<sup>8</sup>

<sup>5</sup> Donald J. Shoemaker, *Theory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74; 이윤호, 『범죄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p. 223.

<sup>6</sup> Robert K. Merton, *Theory and Social Structure* (London: The Free Press of Glencoe, 195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윤호, 『범죄학개론』, pp. 224~228 참조.

<sup>7</sup> Peter H. Rossi et al., *Money, Work, and Crime: Experimental Evidence* (N.Y.: Academic Press, 1980); John E. Conklin, *Criminology*, p. 547.

<sup>8</sup>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65), pp. 365~367.

### (3) 사회문화적 요인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안정성 역시 범죄문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셀린(T. Sellin)은 집단간의 ‘문화적 갈등’(cultural conflict) 차원에서 범죄문제를 설명하고 있다.<sup>9</sup> 즉 ‘행동규범’이라는 것은 집단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이한 집단의 행동규범간에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규범은 보편성을 갖는 국가가 제정한 법과는 다른 것이다. 즉, 비록 법이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지역, 계층, 연령, 종교, 성, 세대 등에 따라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집단적(혹은 개인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범죄는 이러한 가치체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셀린은 이러한 문화적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sup>10</sup> 일차적 문화갈등은 상이한 두 문화 사이의 경계지역에서 일어나며, 이 외에도 식민화의 경우처럼 특정 문화의 법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때, 또는 이민의 경우처럼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차적 문화갈등은 한 문화 내에서의 갈등으로 하나의 문화가 각자 자신의 고유한 행동규범을 가지는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화로 진화될 때 일어난다고 보았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전통적인 신분상의 계층화도 여전히 잔존한 채, 수많은 영역에서 사회계층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계층화 내지 분화가 추구하는 사회적 다양성, 역동성 등은 현대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치안부재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 나. 공식적 범죄통계

한 나라의 범죄현상 및 범죄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형사사법기관이 발간하는 범죄통계를 보는 것이다. 공식적 통계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발생한 각종 범죄발생 추세, 당해연도의 죄종별 범죄발생 상황, 범인검거

<sup>9</sup> Thorsten Sellin, *Culture Conflict and Crime* (N.Y.: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38), pp. 32~33.

<sup>10</sup> *Ibid.*, pp. 104~105.

상황, 범죄자의 형사처벌 결과 등을 집계하고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거시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식적 범죄통계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범죄발생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의 발생 특성을 알아보는 데도 유용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치안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나 시각에 따라 탄력적으로 치안인력을 운용할 수도 있다.<sup>11</sup>

따라서 공식적 범죄통계는 범죄현상과 이의 문제를 개괄적·거시적으로 진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범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형사사법통계자료집과 FBI가 발간하는 범죄보고서, 일본의 범죄백서, 대한민국의 경찰통계연보와 범죄분석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내무부 소속하의 독일연방수사국(BKA: Bundes Kriminalamt)에서 경찰범죄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 범죄통계에 의한 접근방법은 단점 역시 적지 않다. 먼저, 공식적 범죄통계라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인지·처리한 산술적 집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했으나 고소·고발이 없었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범죄(hidden crime)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범죄의 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셋째, 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통계의 신뢰성 문제이다. 형사사법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건수를 늘릴 수도 있으며, 지역 치안의 안정성을 알리기 위하여 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sup>12</sup>

## 2. 미시적 관점

범죄현상 및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추론적이며,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해 내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공식적 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범죄행위만 기록된다는 점에서 실제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피해자조사(victim survey) 등이 대표적이다(피해자조사 외에도 '자기보고식 조사'도 유용하다). 특히, 피해자조사는 공식통계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암수범죄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sup>11</sup> 김상균, 『범죄학원론』 (서울: 양서원, 2004), p. 27.

<sup>12</sup> 위의 책, pp. 27~28.

가 크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는 처음에는 암수조사가 주목적이었으나 점차 피해 실태의 규명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어떠한 특성의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범죄 피해를 주로 경험한다는 사실과 범행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역할을 비롯한 범죄 발생과정을 밝혀줌으로써 범죄예방, 그리고 피해의 축소와 범행기회의 제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sup>13</sup> 어떻게 보면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암수범죄와 범죄피해의 특성은 매우 밀접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심각성 모델’(seriousness model)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1976년 스코간(W. G. Skogan)에 의해 그 이론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그는 26개 도시에 대한 국가범죄조사 결과, 피해자의 범죄신고 여부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범죄의 심각성’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성의 기준은 재산적 손실정도, 물리력의 사용여부, 무기의 사용여부, 신체적 상해정도, 폭행을 한 사람의 면식 여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sup>14</sup> 스코간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블락(R. L. Block)은 이전의 경험적 연구에서 스코간이 주장한 범죄자의 면식여부가 신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sup>15</sup>

배취맨(R. Bachman)은 강간범죄의 피해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녀는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해 이른바 ‘예측모델’(predic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강간사건의 주변상황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고여부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sup>16</sup> 중요한 것은 배취맨의 예측모델 역시 스코간이 제시한 범죄의 심각성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배취맨은 강간범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고율 간의 역(逆)관계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일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신고 여부는 스코간이 제시한 범죄의 심각성 정도 외에, 주민의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sup>17</sup> 즉, 주민과 경찰이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sup>13</sup> 이윤호, 『범죄학개론』, pp. 37~38; 김상균, 『범죄학원론』, p. 300.

<sup>14</sup> W. G. Skogan, “Crime and Crime Rate,” in *Sample Survey of Victims of Crime*, W. G. Skogan(ed.), (Cambridge, MA: Ballinger, 1976),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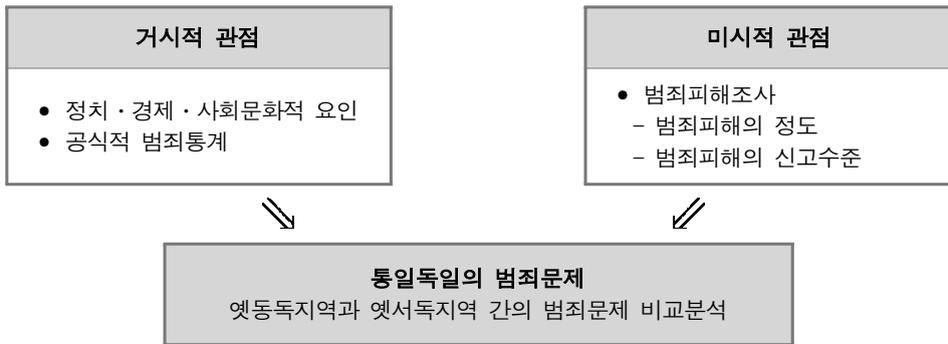
<sup>15</sup> R. L. Block, “Why Notify the Police?: The Victim’s Decision to Notify the Police of an Assault,” *Criminology* (1974), pp. 555~569.

<sup>16</sup> R. Bachman, “Predicting the Reporting of Rape Victimization,” *Criminal Justice Behavior*, Vol. 20(1993), pp. 254~279.

신고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상호불신관계가 형성되면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에게 범죄신고를 했을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피해와 같은 제2차 피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의 신고율을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옛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동안 경찰과 같은 국가당국으로부터 보호보다는 통제를 받아왔고, 따라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범죄신고의 정도가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심각성 모델에서 예측되지 않는 ‘피해자 의사결정 모델’(victim decision-making model)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sup>18</sup> 이 모델에서는 이웃의 통합과 신고결정의 여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구결과 지역주민의 통합(neighborhood integration) 정도는 범죄신고와 긍정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 여전히 스코간의 심각성 모델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9</sup>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의 연구분석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분석의 모형



<sup>17</sup> R. F. Kidd and E. F. Chayet, “Why Do Victim Fail to Report: the Psycholog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 (1984), pp. 39~50.

<sup>18</sup> M. S. Greenberg and R. B. Ruback, “A Model of Crime Victim Decision-Making,” *Victimology* (December 1985), pp. 600~616.

<sup>19</sup> A. J. Lurigio et al., *Victim of Crime: 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 (Newbury Park, CA: Sage, 1990).

### Ⅲ. 거시적 범죄문제 분석

#### 1.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 가. 정치적 요인

통일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바로 정치적 갈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먼저, 정치·사회적 계층구조의 변혁이 미친 결과이다. 즉 비단 과거 동독공산당 간부 뿐만 아니라 당에 충성했던 계층은 통일 이후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반해 구체제에서 억압받던 계층은 새로운 지위상승의 기회를 획득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만족은 당연하며, 이는 통일 이후 양 지역의 주민들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상황에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sup>21</sup>

다음으로 통일 이후 제도의 확립 과정에서 동독인들의 정치적 소외 현상이다. 이는 정치적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동독지역의 주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주요 관리자들은 대개 서독 출신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한 결과이다. 즉, 동독지역에 대해서 체제변화를 이러한 변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독지역의 경찰, 판사, 검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동독지역에 파견되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동독에서 영구직업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독지역 형사사법 관련지식과 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관련가치체계에 있어서도 극심한 변화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일 후 대략 75%의 동독지역 출신의 경찰과 판사, 그리고 검사들이 퇴출되거나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 과거 공산 엘리트들이 상급관리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독지역의 국가기관과 기업의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서독인들이 과도하게 진출한 결과, 동독지역 주민들의 열등감을 고조시켰으며, 동독이 서독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감정

<sup>20</sup> 임채완 외, 『분단과 통합: 외국의 사례와 남북한』 (경기: 한울, 2005), pp. 113~115.

<sup>21</sup> Joachim Gauck, "Noch lang fremd," *Der Spiegel*, No. 40(1997), p. 48.

<sup>22</sup> Helmut Kury et al., *Reporting of Crime to The Poli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 Comparison of the Old and the New Lands*, p. 127.

을 촉발, 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정체성 상실을 더욱 증폭시켰다.

마지막으로 통일독일이 피할 수 없는 동독의 과거청산 작업도 사회문제를 가중시킨 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동독지역 주민들이 동독 시절 비밀경찰 활동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 문서의 정리 및 처리 과정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독지역 주민들간의 상호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호불신은 실업률의 증가, 가치관 전도 및 혼란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범죄율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및 극우세력의 급속한 성장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으로 표출되었다.<sup>23</sup>

요약하자면, 급작스러운 통일 직후 동독지역 주민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정치이념과 사회제도의 낯선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당혹감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아노미 상태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한 긴장이론의 입장에서 최근 동유럽의 범죄양상에 대한 설명이 시도된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동유럽의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범죄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시대의 동유럽은 서유럽의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낮은 범죄발생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는 증가하였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자유화 및 자본주의화과정에서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제전환시기의 동유럽사회에서 공유된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성공이었다. 그러나 자유화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는 더 증가되었는데 비하여,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수단은 더욱 약화되었다. 즉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졌으며, 정치적인 자유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개인의 불만과 긴장은 증가하였고, 그러한 결과가 범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sup>24</sup>

<sup>23</sup> Peter Lohaus, "Citizenship and Exclusion," *Paper presented for Society for the Advancement Socio-Economics*. London, 7~11 (July 2000).

<sup>24</sup> J. J. Savelsberg, "Crime, Inequality, and Justice in Eastern Europe: Anomie, Domination, and Revolutionary Change," *Crime and Inequality*. John Hagen and Ruth D. Perterson(e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나. 경제적 요인

독일통일은 동서독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독일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독주민의 경우, 통일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 결과 재정적자의 확대와 공공지출의 삭감이 감행되면서, 서독지역의 소득분배 불균등을 심화시켜, 사회보장 혜택을 누려왔던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진 반면, 동독지역 투자유발을 위해 취해진 감세조치에 따라 고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는 1992년 전후 최대의 노조파업이 발생했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조합주의적 성격을 보여 온 구서독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 이후 파업사태는 내적 통합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비용의 과도한 부담은 서독주민들의 통일 결과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이 불만은 동독주민들에 대한 원망으로 전이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통독 후 개인의 경제적 만족도 분석

(단위: %)

구 분	서 독 인	동 독 인
매우만족	20	37
부분적으로 만족	30	50
상태가 나빠졌다	50	13

출처: Der Spiegel지가 Emid(빌레펠트 소재), Usama(동베를린 소재), Zentralinstitut fuer Jugend-forschung(라이프찌히 소재)등 3개 여론조사 연구기관에 의뢰 1990년 10월초 조사; Der Spiegel지, Spiegel Spezial 1/1991(Hamburg, 1991), pp. 13~80;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1992), p. 267.

또한 급속한 체제흡수적 통일은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큰 문제를 안겨주었다. 통일은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신탁청의 주도하에 추진된 사유화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급변과정에서 동독 산업구조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생산성의 급락과 대량실업이 초래되었다. 통일 초기 산업의 해체 및 사유화과정에서 동독 노동인력의 약 반 정도가 실업문제에 직면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지역 경제의 전반적 개선과 더불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서독지역 실업률과 비교하여 2배

에 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차차하고, 실업은 생계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2> 동서독지역의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서독지역	5.5	5.8	8.2	9.2	9.3	10.1	11.0	10.5	9.9
동독지역	10.9	14.9	15.8	16.0	14.9	16.7	19.5	19.5	19.0

출처: 임채완 외, 『분단과 통합: 외국의 사례와 남북한』 (경기: 한울, 2005), p. 119.

#### 다. 사회문화적 요인

분단 40여 년간 형성된 동서독의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통일 후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문화는 속성상 짧은 시간 내에 변화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질화된 양 지역의 사회문화가 쉽게 동화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물론 문화개념의 포괄성과 모호성 탓에 동서독의 사회문화가 어느 정도 이질화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서독주민의 이질화된 삶의 이해 내지 삶의 양식은 표면적으로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동서독의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일차적으로 양 체제의 상이한 현대화 과정이 낳은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현대성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는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생활양식의 수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특히 동독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현대화에서 드러난 분화와 갈등을 조화 및 협동과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극복하려는 사회주의적 현대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출발부터 서독과는 매우 상이한 사회문화의 형성 기반이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이며 상명하달식의 체제는 동독주민들을 식민적인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특히 당의 지휘를 받는 사회단체들을 매개로, 또는 사회의 각 부분 및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침투한 비밀경찰의 활동으로 유지되었던 현

<sup>25</sup> 임채완 외, 『분단과 통합: 외국의 사례와 남북한』, pp. 109~110.

존사회주의의 일당독재적 지배구조는 동독의 사회문화를 왜곡·변형시켰다.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통치구조 속에서 동독주민들은 만성적인 사회심리적 결핍감을 가지게 되었고, 억압에 대하여 이중적 행위양식으로 대응해왔다. 즉 그들은 공적 생활에서 매우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적 생활에서는 억압과 통제로부터 도피하여 가족적 내지 배타적 소집단간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처럼 소위 ‘틈새사회(Nischengesellschaft)’ 또는 ‘연줄공동체’로 규정되었던 동독사회문화의 유산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서독체제에 대한 사회적 동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서독으로의 흡수통일로 인해 동독지역 주민들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서독체제의 잣대로 평가됨에 따른 사회심리적 결핍감과 열등감 내지는 좌절감 등이 동독지역의 배타적 소집단의 유대를 강화시켜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결속시켰고, 이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범죄율이 서독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배경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질서’라는 측면에서 인식하는 서독지역 주민들과 달리 동독지역 주민들은 사회적·경제적 성과로 측정한다. 옛동독정권의 온정주의에 익숙한 그들은 자유시장체제가 요구하는 사회적 경쟁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에 휩싸이며, 자신의 사회적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국가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인다.

<표 3>에서와 같이 통일 직후인 1992년 동서독 인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서독인의 경우 주로 환경이나 건강문제를 꼽고 있으나, 동독인들은 범죄증가에 대한 불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동독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은 단순히 가치의 혼란 문제를 넘은 것으로 통일 후 동독지역의 범죄발생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sup>26</sup>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통권 제26호(1995년 여름), pp. 27~38.

&lt;표 3&gt;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

(단위: %)

불안 원인	서독인	동독인	불안 원인	서독인	동독인
범죄증가	31	68	건강 장애	36	33
실업상승	27	66	전쟁 발발	17	32
청소년 마약복용	37	64	물가상승	23	28
폭력증가	29	57	유해식품	34	24
에이즈 감염	33	48	도덕적 타락	13	17
대기·수질오염	47	45	직업상 애로	13	16
정치적 극단주의	20	40	생활수준	9	14

출처: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p. 271.

한편으로는 동독주민들의 부적응 및 불만은 단순히 환경변화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급격한 체제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의 극복도,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신들의 탓이기도 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는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높은 적응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무의식세계에 잔존하는 기존의 심리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다음 <표 4>에서와 같이 “동독주민은 2등 국민(Zweite Klasse)”이라는 견해에 대한 동서독인의 의사를 조사해 본 결과 동독인들의 과반 수 이상이 “맞다”라고 답해, 동독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4&gt; “동독주민은 2등 국민(Zweite Klasse)”이라는 견해에 대해

(단위: %)

	서독인	동독인
맞다	33	75
틀리다	47	15
모르겠다	19	8

출처: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p. 266.

사실 동독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는 평화적 혁명으로 쟁취한 공산정권의 붕괴과정에서 내적 민주화의 기회를 저버린 결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왜곡된 정치·사회문화 및 사회심리적 구조를 극복하기

보다 서독의 경제력에 현혹되어 서독체제를 단시간에 쉽게 받아들이는 길을 택했다. 적응에 대한 불안, 막연한 피해의식 및 방어심리, 과거에 대한 향수 등은 상당부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7</sup>

## 2. 공식적 범죄통계

사실, 독일의 통일 이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범죄현상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범죄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몇 연구조사 결과, 옛동독지역에서 강도,<sup>28</sup> 은행 및 우체국 강도<sup>29</sup>, 그리고 무단침입과<sup>30</sup> 같은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통합으로 인한 국경개방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국경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많은 범죄자들이 무기를 소유하고 동독지역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sup>31</sup> 아울러 이전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범죄문제를 보다 체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문과, TV, 그리고 라디오 등이 동독과 서독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혁기간 동안 독일연방경찰(Federal Police Office)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경찰은 미국의 FBI가 운영하는 표준범죄통계프로그램(UCRP: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과 유사한 형태로 범죄통계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BKA: Bundes Kriminalamt)

<sup>27</sup> Hans-Joachim Maaz, *Der Gefü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 (Berlin: Argon Verlag, 1990). p. 4.

<sup>28</sup> H. Skoda, "Raubüberfälle auf Banken. Geldinstitute zwischen Rostock und Suhl," *Kriminalistik 45* (1991); Helmut Kury et al., *Reporting of Crime to The Poli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 Comparison of the Old and the New Lands*, p. 128.

<sup>29</sup> P. Musiol, "Moderne Raubritter. Zu Erwähnenswerten Erfolgen bei der Aufklärung von Raubstrafataten," *Kriminalistik 45* (1991), pp. 592~594.

<sup>30</sup> P. Legler, "Wohnungseinbrüche-Tendenz Steigend. Dresden als Beispiel für Entwicklung und Probleme bei Einbruchdiebstählen," *Kriminalistik 45* (1991), pp. 343~345.

<sup>31</sup> *Ibid.*; W. Steinke, "Kriminalitätsentwicklung," *Kriminalistik 45* (1991), p. 200.

은 매년 경찰범죄통계(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범죄통계는 살인, 강간, 강도, 상해, 폭행, 개인자유침해범죄, 단순절도, 중절도, 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장물, 방화, 손괴, 환경범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범죄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sup>32</sup>

### 가. 전체범죄의 발생 건수

<표 5>에서는 독일의 인구·범죄발생 건수·범죄발생을 증감추이 등을 나타내주고 있다. 1992년까지는 동독지역이 제외된 서독지역의 범죄통계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1990년 통일을 이루었지만 1991년과 1992년까지의 동독지역의 통계자료는 그 통계적 수치가 너무 낮아서 표준자료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까닭이다(그리고 통일 이전의 동독지역의 범죄통계자료 역시 객관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 당시의 독일지역은 과도기적 시기로서 발생한 범죄가 정확하게 파악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일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의 범죄통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표를 보면, 통일 전부터 통일 이후 1992년까지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서독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1992년의 범죄증가율은 무려 8.3%에 달하고 있어 서독지역의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시 서독의 사회적 무질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3년 이후부터는 범죄증가율이 안정적인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에서 볼 때에는 통일 이후에 약 8,000건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보면, 통일 이후 범죄문제가 그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통일과 범죄증가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sup>32</sup> 독일연방범죄수사국 홈페이지 <http://www.bundeskriminalamt.de/>(검색일: 2006.4.26)

&lt;표 5&gt; 연도별 독일의 인구·범죄발생 건수·범죄발생율 증감추이

연도	인구	인구 증감율	총 범죄발생 건수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범죄증감율
1971	61,293,700	-	2,441,413	3,983	-
1975	61,832,200	-0.3	2,919,390	4,721	6.8
1980	61,560,700	0.4	3,815,774	6,198	7.6
1985	61,015,300	-0.3	4,215,451	6,909	2.3
1990	62,679,000	1.1	4,455,333	7,108	1.1
1991	65,001,400	-	4,752,175	7,311	-
1992	65,765,900	1.2	5,209,060	7,921	8.3
1993	80,974,600	*	6,750,613	8,337	*
1994	81,338,100	0.4	6,537,748	8,038	-3.6
1995	81,538,600	0.2	6,668,717	8,179	1.8
1996	81,817,500	0.3	6,647,598	8,125	-0.7
1997	82,012,200	0.2	6,586,165	8,031	-1.2
1998	82,057,400	0.1	6,456,996	7,869	-2.0
1999	82,037,000	0.0	6,302,316	7,682	-2.4
2000	82,163,500	0.2	6,264,723	7,625	-0.7
2001	82,259,500	0.1	6,363,865	7,736	1.5
2002	82,440,300	0.2	6,507,394	7,893	2.0
2003	82,536,700	0.1	6,572,135	7,963	0.9
2004	82,531,700	0.0	6,633,156	8,037	0.9

\* 1991년과 1992년의 동독통계자료가 너무 낮아서 표준자료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이전자료는 서독의 통계자료임. 1993년부터 통일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이는 통일을 전후해서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의 전체범죄가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광도는 독일연방범죄수사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동독지역의 경우, 통일 직후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1994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동독지역의 범죄발생율은 서독지역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았다.<sup>33</sup> 그런데, 위에서 통일을 전후해

<sup>33</sup>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

서 1992년까지의 동독지역의 범죄통계자료는 파악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1994년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범죄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1994년의 경우 범죄율이 3.6% 감소함), 이는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범죄통계가 표준화되어 집계되고 있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독지역의 범죄문제가 서독지역보다 더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처럼 서독지역에 비해 동독지역의 낮은 범죄율이 전체범죄의 증가율을 상쇄시켜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동독이 그 갈등양상이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범죄문제는 오히려 적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른다. 즉, 서독과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 범죄문제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동일 이전의 동독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범죄통계적 해석에 있어서 차이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단순히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범죄율의 증감율을 놓고 보느냐, 아니면 인구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범죄의 비교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 나. 범죄의 유형에 따른 변화

<표 6>에서는 1991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동안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범죄유형별 구성비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sup>34</sup> 이를 보면, 통일 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전체범죄는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범죄유형별로 볼 때에도 대부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체범죄 및 범죄유형별 증가추세는 동독지역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독지역의 경우, 1991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동안 전체범죄가 0.11% 증가한 것에 반하여 동독지역의 경우 1.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범죄유형별로 볼 때에도 서독지역의 경우 그 증가가 미미하며, 또 일부범죄(강간, 중절도, 방화 등)는 적은 차이지만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경우 범죄유형별 증가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약물범죄의 경우 무려 45.0%, 문서위조는 17.8%, 장물범죄

사정책연구원, 1998), p. 83.

<sup>34</sup> <<http://www.bundeskriminalamt.de/>>;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p. 86.

는 10.3%, 상해범죄 4.58%, 사기범죄 4.74% 증가하는 등 범죄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에 의해서 독일지역이 상대적으로 범죄문제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동서독의 범죄유형별 구성비

구 분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1	(%)	1996	(%)	증감율	1991	(%)	1996	(%)	증감율
전체범죄	4,752,175	100.0	5,254,557	100.0	0.11	550,621	100.0	1,393,041	100.0	1.53
살인	2,555	0.1	2,893	0.1	0.11	153	0.0	661	0.0	3.32
강간	5,454	0.1	5,373	0.1	-0.01	367	0.1	855	0.1	1.33
강도	44,638	0.9	55,010	1.0	0.23	4,068	0.7	12,568	0.9	2.09
상해	73,296	1.5	85,040	1.6	0.16	2,922	0.5	16,293	1.2	4.58
폭행	134,750	2.8	164,369	3.1	0.22	19,652	3.6	50,069	3.6	1.55
개인자유침해	72,214	1.5	93,999	1.8	0.30	5,570	1.0	28,602	2.1	4.14
단순절도	1,201,444	25.3	1,269,521	24.2	0.06	182,471	33.1	291,258	20.9	0.60
중절도	673,168	35.2	1,558,582	29.7	-0.07	190,585	34.6	553,294	39.7	1.90
사기	371,542	7.8	556,888	10.6	0.50	15,978	2.9	91,762	6.6	4.74
문서위조	50,429	1.1	67,888	1.3	0.35	771	0.1	14,508	1.0	17.82
장물	24,813	0.5	25,871	0.5	0.04	388	0.1	4,402	0.3	10.35
방화	17,831	0.4	17,136	0.3	-0.04	2,580	0.5	6,952	0.5	1.69
손괴	431,700	9.1	474,576	9.0	0.10	88,819	16.1	147,842	10.6	0.66
약물	117,046	2.5	179,754	3.4	0.54	158	0.0	7,268	0.5	45.00
기타범죄	531,295	11.2	697,711	13.3	0.31	36,139	6.6	166,707	12.0	3.61

#### IV. 미시적 범죄문제 분석

미시적 관점에서는 동독지역의 주민과 서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범죄피해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범죄피해정도와 경찰과 같은 공식적 기관에 대한 신고수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조사는 제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접 수집한 1차 자료가 아니라 큐리(H. Kury) 등에 연구된 2차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sup>35</sup> 이 연구자료의 수집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1989년 9월 9일)된 지 1년 후(1990년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범죄피해조사가 동서독의 통일을 전후에서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일 당시의 범죄문제를 진단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일 이후의 범죄피해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예측하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분석하게 된 범죄피해자 조사자료는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999명과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27명과의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피해자조사를 수차례 실시해왔기 때문에, 동독지역과 동일한 큰 표본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독에서의 조사는 거의 처음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큰 표본집단을 만들게 되었다.

## 1. 범죄피해의 정도

<표 7>에서는 범죄피해조사에서 다룬 11가지 범죄 유형 중 응답자들이 어떤 유형의 범죄피해자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은 통일 이전의 4년 동안의 기간과 통일 이후 1년 동안에 관련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피해응답은 각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적어도 한번이라도 경험한 것은 모두 포함되었다. 그리고 범죄피해율을 표준화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천분율(per thousand)로 계산하였다.

전반적으로 통일 전 4년과 통일 후 1년 모두 동독지역보다 서독에서의 범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일 전에 동독지역의 범죄율은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9.0%였고 서독지역은 314.3%로, 그 비율이 1:1.26이었다. 통일 후 1년 동안의 조사에서는 동독지역은 133.4%였고 서독지역은 160.8%이어서 그 비율이 1:1.2이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전체 주거범죄, 개인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특정 범죄유형에서는 일부 예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일 전에는 자전거절도관련 범죄율이 동독지역(80.2%)이 서독지역(65.1%)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러나 통일 후 1년 동안 상황이 뒤바뀌어 나타났다. 즉 동독지역의 비율이 30.0%이었고 서독지역의 비율이 35.5%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자전거 소유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서독지역의 자전거범죄의

<sup>35</sup> Helmut Kury et al., Reporting of Crime to The Poli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 Comparison of the Old and the New Lands 참조.

변화를 소유상황의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서독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가정마다 1.49대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독에서는 평균적으로 1.58대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 전에 주거침입범죄 비율은 동독지역이 더 높았는데(동독, 29.6%; 서독, 27.1%), 이 상황도 통일 이후에 바뀐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동독, 13.4%; 서독, 14.3%). 그러나 주목할 것은 두 시기 모두에서 미수범죄가 동독의 가정범죄 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7>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율

구 분	통일 이전 4년간				통일 이후 1년간			
	서독지역 (N=2,027)		동독지역 (N=4,999)		서독지역 (N=2,027)		동독지역 (N=4,999)	
	발생건수	피해율 (1,000)	발생건수	피해율 (1,000)	발생건수	피해율 (1,000)	발생건수	피해율 (1,000)
<b>전체 범죄</b>	<b>637</b>	<b>314.3</b>	<b>1,245</b>	<b>249.0</b>	<b>362</b>	<b>160.8</b>	<b>667</b>	<b>133.4</b>
<b>주거 범죄</b>	<b>465</b>	<b>229.4</b>	<b>975</b>	<b>195.0</b>	<b>252</b>	<b>124.3</b>	<b>473</b>	<b>94.6</b>
자동차절도	13	6.4	8	1.6	6	3.0	5	1.0
오토바이/모터 자전거절도	9	4.4	65	13.0	4	2.0	30	6.0
자전거 절도	132	65.1	401	80.2	72	35.5	150	30.0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	120	59.2	172	34.4	48	23.7	81	16.2
자동차파괴	136	67.1	181	36.2	93	45.9	140	28.0
주거침입절도	55	27.1	148	29.6	29	14.3	67	13.4
실 행	34	16.8	78	15.6	16	7.9	27	5.7
미 수	21	10.4	70	14.0	13	6.4	40	8.0
<b>대인 범죄 재산절도</b>	<b>98*</b>	<b>48.3</b>	<b>146</b>	<b>29.2</b>	<b>46</b>	<b>22.7</b>	<b>109</b>	<b>21.0</b>
범인마주침	32	15.8	33	6.6	13	6.4	49	9.8
마주치지않음	62	30.6	113	22.6	33	16.3	60	12.0
<b>대인폭력범죄 전체(폭행, 강도)</b>	<b>70</b>	<b>34.5</b>	<b>119</b>	<b>23.8</b>	<b>59</b>	<b>29.1</b>	<b>79</b>	<b>15.8</b>
폭 행	45	22.2	98	19.6	39	19.2	63	12.6
상 해	11	5.4	28	5.6	28	13.8	23	4.6
상해없음	34	16.8	70	14.0	70	34.5	40	8.0

강도	25	12.3	21	4.2	21	10.4	16	3.2
무기사용	6	3.0	2	0.4	2	1.0	4	0.8
무기없음	19	9.4	19	3.8	19	9.4	12	2.4
<b>강간**</b>	<b>4</b>	<b>2.0</b>	<b>5</b>	<b>1.0</b>	<b>5</b>	<b>2.5</b>	<b>6</b>	<b>1.2</b>
실행	1	0.5	1	0.2	1	0.5	0	0.0
미수	3	1.5	4	0.8	4	2.0	6	1.2

\* 4명은 범인과 직접 마주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밝히지 않음.

\*\* 강간은 여성 응답자에 기초하여 계산된 것임.

## 2. 범죄피해의 신고수준

통일독일(통일 이전의 서독)의 범죄신고체계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공식적(서신, 전화, 사람 등)으로 알리면, 경찰은 반드시 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접수하고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통일 이전의 동독 지역에서는 경미한 범죄들에 대한 신고방법은 경찰에 대한 신고 외에 또 다른 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직장 내에서나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는 경찰 외에 특별시민위원회(special committees of citizens)에서도 다룰 수 있었다. 이러한 신고구조는 경찰과 같은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범죄용의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심할 경우에는 경찰에게 사건이 이관되었지만, 일차적으로 모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동독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은 서독지역의 피해자들보다 경찰과 접촉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서 신고율이 낮다고 볼 수 있는가? 절도범죄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고율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다. 통일 전과 통일 후의 동독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절도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경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고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일 전과 통일 후의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일부 피해자들은 이것이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었고, 양 지역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경찰에 대한 신고율의 차이는 경찰에 대한 거부반응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8>에서는 통일 이전 4년 기간 동안 10개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경찰에

이를 신고한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다(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는 한 개의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에서는 카이스퀘어(chi-square)검증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동독지역의 주민과 서독지역의 주민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다만, 자동차절도는 동독에서는 모두 신고되었고, 서독에서는 오직 1건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8> 통일 이전 4년 동안의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율

구 분	서독지역			동독지역			양 지역의 범죄신고율 차
	피해자수	신고수	신고율 (%)	피해자수	신고수	신고율 (%)	
<b>전 체</b>	<b>617</b>	<b>427</b>	<b>69.2</b>	<b>1,179</b>	<b>719</b>	<b>61.0</b>	<b>-8.2**</b>
자동차절도	13	12	92.3	8	8	100.0	+7.7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	120	105	87.5	172	78	45.3	<b>-42.2**</b>
자동차류 파괴	136	82	60.3	181	73	40.3	<b>-20.0**</b>
오토바이/ 모터자전거 절도	9	8	88.9	65	57	87.7	-1.2
자전거 절도	132	109	82.6	401	307	76.6	-6.0
주거침입절도	34	27	79.4	78	61	78.2	-1.2
강 도	25	17	68.0	21	12	57.1	-10.9
절 도	98	49	50.0	146	84	57.5	+7.5
성 폭 행*	5	3	60.0	9	5	55.6	-4.4
폭 행	45	15	33.3	98	34	34.7	+1.4

\* 강간 실행 및 미수 포함

\*\*  $p \leq .01$

조사결과,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범죄피해신고에 있어서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와 자동차에 대한 파괴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들 두 지역간의 신고율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즉, 서독지역에서는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범의 대다수(87.5%)가 경찰에 신고되었다. 반면에 동독지역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45.3%)정도가 신고되었다. 아울러 서독지역에서는 자동차량 파괴범의 10명 중 6명꼴로(60.3%) 신고된 반면, 동독에서는 단지 40.3%만이 신고되었다.

이 밖의 다른 범죄유형의 신고율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 전 서독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신고율(69.2%)이 동독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신고율(61%)보다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서독지역이 동독지역보다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 범과 파괴범에 있어서 왜 더 많이 신고되고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서독지역의 자동차들은 동독지역의 자동차들 보다 더 많이 관련보험에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건에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서독지역의 관련범죄의 높은 신고율(87.5%)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실제로, 서독지역에서 관련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15명의 응답자 가운데 3명(20%)은 그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동독지역에서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의 피해를 경험한 94명의 피해자들 중에서 단지 5명(5.3%)만이 자신들의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신고구조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일 이전 동독지역에서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사회 내의 사회구성원들로 조직화된 위원회에 이 문제를 신고하고, 이 위원회의 어떠한 재량적 조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 사건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즉, 관련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단지 4명(4.3%)만이 경찰이 아닌 직장 및 지역사회 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 파괴의 피해자들은 1/3이 경찰이 아닌 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표 9>에서는 통일 후, 12개월 동안 10개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경찰에 이를 신고한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마찬가지로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는 한 개의 유형으로 통합하였고, 각 범죄유형에 대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일 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절도는 동독과 서독 모든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lt;표 9&gt; 통일 이후 1년 동안의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율

구 분	서독지역			동독지역			양지역의 범죄신고율 차
	피해자수	신고수	신고율 (%)	피해자수	신고수	신고율 (%)	
<b>전 체</b>	<b>335</b>	<b>206</b>	<b>61.5</b>	<b>623</b>	<b>311</b>	<b>49.9</b>	<b>-11.6**</b>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	48	36	75.0	81	36	44.4	<b>-30.6**</b>
자동차류 파괴	93	48	51.6	140	42	30.0	<b>-21.6**</b>
오토바이/ 모터자전거 절도	4	4	100.0	30	25	83.3	-16.7
자전거 절도	72	57	79.2	150	102	68.0	-11.2
주거침입절도	16	15	93.8	27	18	66.7	<b>-27.1*</b>
강 도	9	7	77.8	16	8	50.0	-27.8
절 도	46	22	47.8	109	51	46.8	-1.0
성 폭 행***	2	0	.0	2	1	50.0	+50.0
폭 행	39	11	28.2	63	23	36.5	+8.3

\* p&lt;.05, \*\* p&lt;.01

\*\*\* 강간 실행 및 미수 포함.

통일 이후에도 자동차부품 및 내부절도와 자동차 파괴행위와 관련하여 동독 지역과 서독지역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일 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범죄 모두 서독지역보다는 동독지역에서 뚜렷하게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통일 이후 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주거침입절도 가운데 서독지역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93.8%)이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동독에서는 2/3(66.7%)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독지역의 응답자들(61.5%)은 동독의 응답자들(49.9%)보다 경찰에 그들이 경험한 가장 최근의 범죄에 대해 더 많이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위의 표에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큐리(H. Kury) 등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피해 조사에서 관련변수들간의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sup>36</sup>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스코간(W. G. Skogan)이 제시한 심각성 모델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제적 손실의 규모는 통일 전후, 동서독 양 지역 모두에 걸쳐 경찰에 범죄를 신고할지를 결정하는 단독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신고여부와 관련하여 동독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이 서독지역보다 통일 전과 후에 경찰과 접촉의 선호도와 관련된다는 제안은 의외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록 심각성 모델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실험대상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통일독일의 범죄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과 공식적 범죄통계를,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범죄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통일이라는 대 변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동독지역의 경우 흡수통일로 인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것 못지않게 범죄와 무질서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의 증가와도 관련된다고 본다. 아울러 공식적 범죄통계를 통해서 볼 때에도 통일독일의 범죄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 이전의 동독지역의 범죄현상 및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 전후의 독일의 범죄문제는 기본적으로 서독의 범죄문제를 기준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 서독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970년 이후 범죄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 이후 한동안 서독지역의 범죄문제는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독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범죄문제의 증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독지역에 대한 범죄현상 및 이의 문제에 대한 접근 결과 상당히 모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격변 속에서 파급효

<sup>36</sup> *Ibid.*, pp. 140~150.

과를 크게 본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 범죄통계관련 보고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동독지역의 범죄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범죄와 관련된 것이며, 통일 전 4년 동안과 통일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이는 여러 여건상 최근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통일 직전 또는 통일 직후의 상황을 살펴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통일 이후 최근에 이르는 동안의 범죄문제를 분석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차후 통일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거시적·미시적 분석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범죄문제가 동독지역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는 범죄문제는 서독지역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독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는 우선, 동독지역 주민에 의해 저질러진 것 뿐만 아니라 개방화로 인한 외국의 범죄자들과 서독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에 환경이 보다 적합한 동독으로 이주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 비록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비공식적 대응체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동독주민의 삶의 방식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한 서독주민의 삶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문제 전문가인 윌슨(J. Q. Wilson)은 개인의 권리 확대와 범죄의 증가를 동일선상에서 다루었다. 즉 개인의 자기표현을 장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방종(self-indulgence)을 장려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the same freedom)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느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범죄 또한 자유롭게 행하고자 느낀다고 주장한 것이다.<sup>37</sup> 자유민주주의의 삶의 방식이 자유롭고 다양한 만큼 범죄문제 또한 자유롭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쨌든 통일독일의 범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양 지역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는 우리

<sup>37</sup> James Q. Wilson and Susanne Washburn, “A Rhythm to the Madness,” *Time* (August 23, 1993), p. 31.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향후,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전후의 상황은 주변여건을 고려해 볼 때, 통일독일에 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문제는 적지 않은 국가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접수: 3월 31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